

‘언니가 동생의 이름으로 혼인(신고)생활, 동생이 혼인무효소송’

대전가정법원 2014. 6. 25. 선고 2013드단6700 판결 [혼인의 무효]

□ 요점 및 설명

1. 개요

○ 당사자

원고: 1974년생 여자

피고: 1973년생 남자

○ 청구의 요지

원고는, 원고의 언니가 원고의 이름을 사용하여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,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에 대한 확인을 청구함

2. 판결의 주요 내용

○ 사안요약

원고의 언니(○○○, 1971년생)가 이미 다른 사람과 법률상 부부인 상태에서 피고와 교제하며 원고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처럼 사용하였고, 원고의 언니 ○○○과 피고 사이에 아이가 생기자 피고가 '원고와 피고'를 부부로 하는 혼인신고를 하였으며, 이후 원고의 언니 ○○○과 피고가 세 자녀를 두고 15년을 넘도록 살아온 상황에서,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, '원고와 피고' 사이의 혼인이 무효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 사례임

○ 판결요지

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피고는 원고의 이름을 도용한 ○○○과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단지 ○○○이 원고의 이름을 도용한 관계로 원고와 사이에 혼인신고

를 마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,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의 합의가 없다고 할 것이고,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.

□ 판결문

※ 사생활보호를 위해 이름과 지역 등을 비실명으로 하고, 표제부와 증거기재 부분 등을 생략함

○ 주 문

1.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9. 5. 7. 00시 00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○ 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소외 ○○○(71년생)은 원고의 언니인데, △△△과 법률상 부부인 상태에서 피고와 교제하면서 원고의 개명 전 이름(□□□)을 사용하고 원고 행세를 하였다.

나. 피고는 슬하에 자녀로 소외 1(1999년생), 소외 2(2000년생), 소외 3(2006년생)이 있는데, ○○○을 원고라고 오인한 채 소외 1의 출생 직전인 1999. 5. 7. 00시 00구청장에게 원고와 사이의 혼인신고를 마쳤다.

다. 한편 △△△은 2001. 5. 7. ○○○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(대전지방법원 2001드단****호)¹⁾ 같은 해 8. 16.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이혼신고를 마쳤다.

라.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혼인신고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마. 한편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, 피고는 그 처인 ○○○, 그리고 자녀들인 소외 1, 2, 3과 동거하고 있다.

[인정 근거] 생략

1) 위 사건에서는 피고가 된 ○○○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었다.

2. 판단

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의 이름을 도용한 ○○○과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단지 ○○○이 원고의 이름을 도용한 관계로 원고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.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의 합의가 없다고 할 것이고,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 사 남 동 희